

	항공·드론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운영 규정	문서번호	YIT-I-0010
		제정일자	2025.5.1
		개정일자	
		페이지	4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연암공과대학교 “항공·드론 혁신융합대학 사업단”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기간) 교육부와의 협약 체결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운영) 사업단에서는 매년 사업의 추진방향, 사업예산, 추진일정, 업무위탁 등 주요사항이 포함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.

제2장 조직 및 위원회

제4조(사업단의 설치·운영) ① 총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업단을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총장은 사업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된 자원 및 인력을 관리하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수행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- ③ 사업단장 및 사업부단장은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.
- ④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1.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2. 성과지표 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
 3.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4. 세부지침 등 수립에 관한 사항
 5.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보관
 6.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
- ⑤ 사업단은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,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, 성과지표 관리, 세부운영지침 마련, 사업성과평가 등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- ⑥ 사업단은 연암공과대학교의 재정지원사업 중복투자방지위원회에서 심의·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추진을 위한 항공·드론 혁신융합대학사업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.)를 구성·운영한다.

- ② 위원장은 사업단장이,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맡으며, 위원은 교원 및 직원,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8인 이내

로 구성한다.

-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사업 계획, 연차, 최종보고서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- 2. 대학발전계획과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
 - 3. 사업비 세부운영지침 수립 및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 - 4. 예산 편성(전용) 및 집행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
 - 5.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- 6. 사업 추진 성과공유 및 확산에 관한 사항
 - 7. 사업 관련 구성원(학생 등)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
 - 8.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

제6조(사업비관리위원회) ① 사업단장은 투명하고,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 및 관리운영을 위한 항공·드론 혁신융합대학 사업비관리위원회(이하 “사업비관리위원회”라 한다.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위원장은 사업단장이,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맡으며, 위원은 본 사업과 연계된 부서 및 학부(과)로부터 실무자를 추천받아 구성한다.
- ③ 사업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편성예산의 비목내 전용에 관한 사항
 - 2.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
 - 3. 기타 사업비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일반사항 등

제7조(성과관리위원회) ①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본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항공·드론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관리위원회(이하 “성과관리위원회”라 한다.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위원장은 사업단장이,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맡으며, 당연직 위원은 처단장, 외부전문가 위원 2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위원회는 성과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자체평가 결과 분석
 - 2. 성과지표 분석 및 의견수렴
 - 3. 사업의 운영성과 및 분석

제8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사업단장은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항공·드론 혁신융합대학사업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자체평가위원회”라 한다.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교원 및 직원, 외부전문가,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

선출한다.

-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사업 추진 자체평가 운영 계획 및 방법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사업 추진 관리 및 운영 전반 평가에 관한 사항
 - 3. 사업 추진 자체평가 환류 및 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
- ⑥ 사업운영에 대한 자체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9조(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) ①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 교육과정개발·편성위원회(이하 “교육과정개발·편성위원회”라 한다.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위원장은 사업단장이,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맡으며, 위원은 외부전문가, 관련 교직원 중에서 8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③ 교육과정개발·편성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④ 교육과정개발·편성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교육과정개발·편성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과정별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
 - 2. 과정별 교육과정 편성
 - 3. 기타 교육과정 개발과 편성에 관련된 사항

제10조(자문회의) 사업의 운영 자문은 대학혁신위원회를 통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다.

제3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

제11조(사업비) ① 사업비 집행에 따른 세부기준은 전문기관의 「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」 근거로 주관대학(한국항공대학교) 및 대학 회계예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.

- ②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,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및 입·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 통장을 개설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하되, 필요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④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(수익금, 특허료, 기술이전료 등)은 연암공과대학교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사업단은 본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로써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㉔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관리·보존 하여야 한다.

제12조(규정개정) 이 규정은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심의위원회의 입안심의 후 개정·폐지 할 수 있다.

제1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사업단의 제반 운영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의 사업 훈령·고시 또는 시행지침 등을 준용한다. 단, 대학에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